#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해식・서영교・조 국

박상혁 • 윤준병 • 안태준

정을호 · 한병도 · 염태영

김태선 · 황명선 · 정준호

박정현 · 서영석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
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.4%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 음.

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,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.

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.

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(bottom-up 방식)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·제3항 신 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 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·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	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지원) ①
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	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	
발행・판매・환전 등 운영에	
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	
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
	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
	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
	출하는 경우 각 광역지방자치
	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
	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반
	영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
	따른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반
	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②·③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